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정관

(改 正 案)

목 차

제1장	총칙 -----	I -1-1
제2장	회원 -----	I -1-1
제3장	임원 -----	I -1-2
제4장	총회 -----	I -1-3
제5장	이사회 -----	I -1-4
제6장	심의위원회 -----	I -1-5
제7장	재산 및 회계 -----	I -1-5
제8장	사무처 -----	I -1-6
제9장	고문 및 자문위원 -----	I -1-7
제10장	해산, 청산 -----	I -1-7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(이하 법인)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법인은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광고인이 자율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광고윤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기업언론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 본 법인은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광고심의 및 조정
2. 광고에 관한 분쟁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
3. 광고윤리 확립을 위한 조사, 연구
4. 광고표현에 관한 상담 및 자문
5. 분야별 광고심의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사업
6. 기타 본 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구성) 본 법인의 회원은 본 기구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광고관련단체 및 업종별 단체, 광고관련 법인으로 한다.

제 6 조 (입회) ① 본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며,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본 법인의 기존 회원과 성격 또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단체 및 법인의 회

원가입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 7 조 (탈퇴)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
1. 회원이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
2. 회원인 해당 단체 및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

제 8 조 (제명)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.

1.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제 9 조 (탈퇴회원의 재산권) 전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탈퇴하였거나 제명 또는 정권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또는 부과금을 비롯하여 일체의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10 조 (회원의 권리)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기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.

제 11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및 본 법인 제 규정의 준수
2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3. 기타 본 법인에서 정한 의무사항

제 3 장 임 원

제 12 조 (임원구성)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3명
3. 이사 11명 이내(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.)
4. 감사 2명

제 13 조 (임원선임)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1. 회장은 광고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,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

받은 자를 피선거권자로 하며, 총회에서 선임한다.

2.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피선거권자로 하며, 총회에서 선임한다.

3.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4. 임기 중 결원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, 보선된 임원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 14 조 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이 임기 중 결원된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까지는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.

④ 회원 단체 및 법인에 소속된 임원의 경우 임기 중 대표자격 또는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여도 소속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교체(보선)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임원자격을 가지나, 그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.

제 15 조 (직무) 본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2. 회장은 본 법인 사무처 임직원을 임면한다.

3. 회장은 본 법인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.

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.

5. 회장,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 이사 중에서 최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
6. 감사는 본 법인의 운영활동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6 조 (총회의 구분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 17 조 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각 회원 단체 및 법인들로부터 등록된 1인의 대의원들로 구성한다.

② 대의원은 각 회원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한 임원으로 한다.

③ 대의원은 소속 단체 및 법인을 대표하여 각기 의결권, 선거권을 행사한다.

제 18 조 (총회의 개최)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

3.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

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
3. 예산, 결산의 승인

4. 임원 선임 및 해임

5. 본 법인의 경비조달에 관한 사항

6. 본 법인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

7.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

8. 이사회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

9. 기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20 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)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임원선출인 경우에 출마자가 3인 이상이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인을 대

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② 총회의 의결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로 한다.

③ 의장 또는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
2.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④ 총회 대의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
⑤ 총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때의 의결방법 및 절차는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다.

제 21 조 (총회 의사록)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, 날인하여 보존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2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본 법인의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3 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25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정관변경의 심의
2. 회원의 가입
3. 사업계획의 심의
4. 예산 및 결산의 심의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6. 광고심의기준위원 및 광고심의위원의 위촉

7. 사무총장의 임면

8. 회원의 제명

9. 예산의 이월 및 전용

10.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

11. 사무처 주요 운영사항

12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이사회 서면의결) ①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이사회 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서명, 날인하여 보존한다.

제 6 장 심의위원회

제 28 조 (구성) ① 본 법인은 광고물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기준위원회와 매체별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광고심의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.

③ 매체별 광고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 29 조 (광고심의기준위원 등) 광고심의기준위원회 위원과 매체별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동의의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30 조 (광고심의기준위원회 운영) 광고심의기준위원회와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고자율심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1 조 (광고심의기준위원회 간사) 사무총장은 광고심의기준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
제 32 조 (심의규정) ① 인쇄매체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방송매체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7 장 재산 및 회계

제 33 조 (재산의 구분)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보통재산 중 회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기로 결의한 재산

제 34 조 (기본재산의 처분) ① 본 법인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임대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세입 및 경비, 회계 연도 등)

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.

1. 회비(입회비 포함)
2. 사업수입
3. 기부금
4. 기타 수입금

②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전항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③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④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6 조 (예산 및 결산) ①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(세입세출결산서)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사업보고서
2. 재산목록
3. 대차대조표
4. 세입세출결산서

5. 잉여금처분계획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
6. 감사결과보고서

③ 본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

2.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

3. 당해년도 말의 재산상황 및 재산목록서 (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 첨부)

4.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

5. 회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

제 37 조 (임원의 보수) 본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장 사무처

제 38 조 (사무처)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총장은 광고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관장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⑤ 사무처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한다.

⑥ 규정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회장의 책임 하에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 9 장 고문 및 자문위원

제 39 조 (고문, 자문위원) ①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법인에 공로가 있는 인사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0 장 해산, 청산

제 40 조 (해산)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
2.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
3. 해산당시의 정관 1부
4. 해산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

제 41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① 본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② 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,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, 수량,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2 조 (정관변경 및 허가) 본 법인의 정관은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3 조 (청산종결의 신고) 본 법인의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,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 【1993. 11. 10】

본 정관은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1995. 3. 15】

본 정관은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1995. 6. 5】

본 정관은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1998. 4. 20】

본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2000. 7. 31】

본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2003. 4. 14】

본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2004. 3. 11】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 제12조(임원구성)제2호 및 제3호와 제17조(총회의 구성)는 2005년 제12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 및 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구성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.

부 칙 【2005. 3. 24】

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2009. 3. 11】
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【2021. 12. 22】
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